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신림공영차고지(저류조 포함)조성공사[장기1차]]

- 점검일시 : 2020.06.09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박상종

○ 기계기구 안전(토목부)

- 자립식옹벽 2구간 흙막이가시설 배면에 위치한 핸드그라인더는 회전부에 방호커버를 설치하여 협착점 보호조치 및 연삭날 파손에 의한 비래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전 방호커버를 설치하고 작업토록 관련 근로자 안전교육 바라며, 현장에 반입된 기계기구류는 반입전 및 매월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기 바람.

- 자립식옹벽 2구간 철근조립 작업장에 위치한 가설전선(콘센트)은 가정용 콘센트 사용을 지양하고, 옥외에서 사용할 경우 방수형 콘센트를 사용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(방호장치의 해체 금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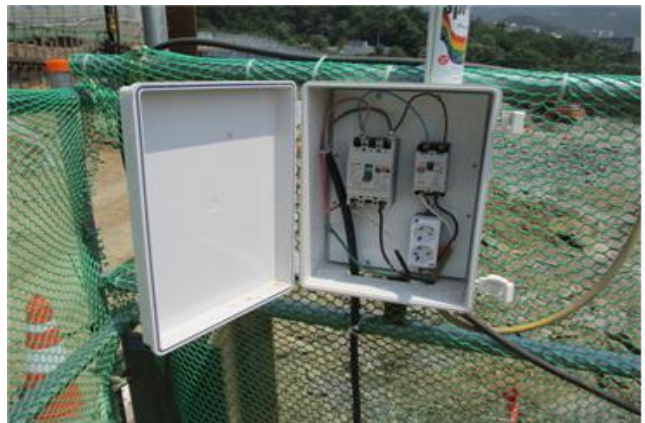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36((5)배선 및 이동전선 사용시 안전작업기준), p41((4)기타 기계기구의 안전작업)
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소형분전반은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어 사용을 위한 열고 닫음이 자유로운 상태로,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 접속부가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 우려가 있으니 접속부 방호덮개를 설치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(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토사 반출을 위해 작업중인 굴삭기는 전면유리가 파손되어 있어 암 파쇄 및 굴착 시 골재 비래에 의한 전면유리가 파손될 경우 운전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전면유리 보완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9(건설기계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어스앵커 천공 작업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중간 파일은 H파일 내부에 토사 및 골재가 적치 부착되어 있어, 인접한 어스앵커 설치 작업자에게 전도 및 낙하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어스앵커 몰탈 주입 및 인장 작업 전 안전조치 후 작업 바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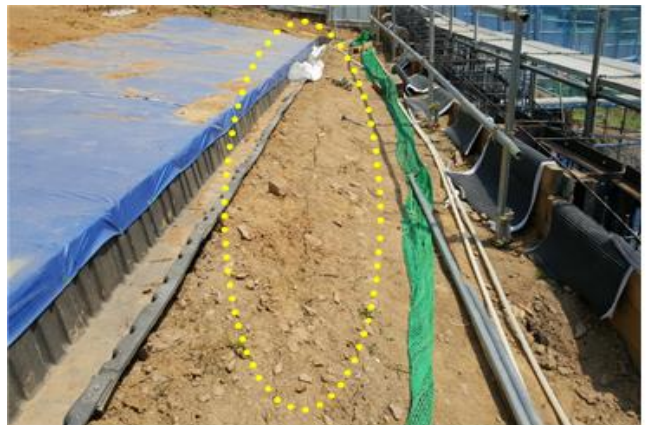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토목부)

- 자립식옹벽 2구간 배면에 토사에 균열이 발생한 흔적이 관찰되니 주기적인 육안 관찰과 계측기 변화 등을 관찰하여 진행성 유무를 점검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)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우천시 현장내 우수를 배수하기 위해 설치한 배수관은 세륜세차시설 설치로 단절되어 있으니 우천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관을 보완 바람.

